

현행·개정안·수정안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정안
<p>제4조(지원기준) ①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축하금을 지원하되, 그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2년째 지급은 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에 지급한다.</p> <p>1. 셋째 자녀: 100만원으로 하며 매년 50만원씩 2년간 지급</p> <p>2. 넷째 자녀: 200만원으로 하며 매년 100만원씩 2년간 지급</p> <p>3. 다섯째 자녀 이상: 500만원으로 하며 매년 250만원씩 2년간 지급</p> <p>② 제3조제2항의 경우 2년째 지급은 지원대상이 된 달부터 1년 후의 다음 달에 지급한다.</p>	<p>제4조(지원기준) ① 출생아의 순서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출산축하금의 구체적 지급기준·금액·지급방법은 세부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<신설></p>	<p>제4조(지원기준) ①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축하금을 지원하되, 그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둘째 자녀: 50만원 2. 셋째 자녀: 100만원 3. 넷째 자녀: 200만원 4. 다섯째 자녀 이상: 500만원 <p>② 제1항에 따른 출산축하금의 구체적인 지급방법·금액은 세부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세부지원계획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.</p>
<p>제10조(<u>지원금의 조정</u>) 이 조례의 시행 이후 국가 또는 대구광역시의 지원정책에 따라 유사한 목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조정할 수 있다.</p>	<p>제10조(<u>지원대상의 조정</u>) --- ----- ----- ----- 지원대상 ----- -----.</p>	<p>제10조 <현행></p>